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4
----------	------

2020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1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전개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분야의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 선정과 내실화, 홍보 및 조사·연구, 자매  
결연 활성화 및 취소·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9  
조).
- 다.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제13조).
- 라.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 마.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  
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바.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  
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 사.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의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8월 1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714호로 발의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  
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키우고, 상  
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  
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합니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촉진,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어촌종합정보 제공, 체험마을 사후 관리 및 농어촌 관광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도시민·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공모 선정)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1]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원 농촌체험활동 참여 학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원)

구분	참여 학교	교류지역	참여인원	사업예산
2017년	서울망원초등학교외 6교	경기도 양평, 여물리체험마을 등	3,899	78,309,200
2018년	서울안천초등학교외 5교	경기도 안성, 양평, 충남 아산 등	1,957	68,077,190
2019년	서울안천초등학교외 5교	경기도 김포, 남양주, 양평 등	1,665	59,428,120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협서울지역본부와 협력하여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농업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up>1)</sup>

1)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농촌학교로 등교해요~ (교육혁신과, 2019.4.7.)

**[표2]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운영계획) 운영 학교**

<p>□ 운영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명: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li> <li>- 운영 기간: 2019.4.8.(월)~6.27.(목) 총 36회 운영</li> <li>- 운영 학교: 청량중 외 25교</li> <li>- 운영 장소: 양주농촌학교, 강화농촌학교, 안성목장학교, 안성농촌학교</li> <li>- 교육 시간: 하루 일정(강의 1시간, 체험활동 3시간)</li> <li>- 운영학교 경비 부담: 없음</li> </ul>						
연번	체험장소	프로그램 운영일	소속청	학교명	인원(명)	비고
1	양주 농촌학교	2019.4.8.(월)	남부	오남중	112	
2		2019.4.22.(월)	남부	개웅중	120	
3		2019.5.20.(월)	남부	개웅중	75	
4		2019.5.30.(목)	성동광진	광희중	107	
5		2019.6.5.(수)	동부	영란여중	101	
6		2019.6.17.(월)	동작관악	관악중	110	
7	강화 농촌학교	2019.4.16.(화)	동부	청량중	72	
8		2019.4.23.(화)	동부	청량중	72	
9		2019.4.30.(화)	강서양천	경서중	60	중계중(56명)과 공동 참가
10			북부	중계중	56	경서중(60명)과 공동 참가
11		2019.5.7.(화)	남부	영원중	120	
12		2019.5.14.(화)	중부	상명사대부여중	100	
13		2019.5.21.(화)	북부	태랑중	110	
14		2019.5.28.(화)	강남서초	언남중	120	
15		2019.6.11.(화)	서부	상신중	70	
16		2019.6.18.(화)	서부	상신중	70	
17		2019.6.25.(화)	강남서초	언주중	110	
18	안성 농촌학교	2019.4.18.(목)	북부	온곡중	100	
19		2019.4.25.(목)	강동송파	성내중	110	
20		2019.5.2.(목)	강동송파	성내중	80	
21		2019.5.9.(목)	서부	창천중	103	
22		2019.5.16.(목)	강서양천	명덕여중	40	영원중(75명)과 공동 참가
23			남부	영원중	75	명덕여중(40명)과 공동 참가
24		2019.5.23.(목)	강동송파	한영중	120	
25		2019.5.30.(목)	성동광진	광희중	108	
26		2019.6.13.(목)	남부	문래중	110	
27		2019.6.20.(목)	강동송파	석촌중	60	중계중(56명)과 공동 참가
28			북부	중계중	56	석촌중(60명)과 공동 참가
29		2019.6.27.(목)	강남서초	언주중	110	
30		안성	2019.4.17.(수)	강동송파	가락중	120

31	목장학교	2019.4.24.(수)	남부	오남중	112	
32		2019.5.8.(수)	동작관악	강현중	120	
33		2019.5.15.(수)	북부	노일중	70	
34		2019.5.22.(수)	북부	태랑중	110	
35		2019.5.29.(수)	성동광진	광희중	55	중계중(56명)과 공동 참가
36			북부	중계중	56	광희중(60명)과 공동 참가
37		2019.6.5.(수)	성북강북	홍대부중	120	
38		2019.6.12.(수)	서부	증산중	90	
39		2019.6.19.(수)	강동송파	석촌중	63	
40		2019.6.26.(수)	강남서초	언주중	110	

○ 그러나 이와 같이 도농교류협력 및 미래농업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에 따라 지엽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도시-농어촌간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협력대상의 선정, 농업교육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도농교육교류협력 대상의 선정과 내실화, 홍보 및 조사·연구, 자매결연 활성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취소·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도농교육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선도학교의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교육협력대상의 선정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이 농어촌의 교류협력대상과 자매결연,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상호 신뢰성, 지속적인 교류가능성, 행·재정적 수준,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농교육교류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는 교육청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농교류사업 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단위 학교 중심의 농촌체험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교육협력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자매결연 교육 가능 지역(학교), 농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내 실 있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홍보 및 조사·연구 등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

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운영지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제1항의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의 홍보와 정보제공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역할,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알림으로써 미래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미래농업교육이 주로 학생들의 농촌 현장체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7조제2항의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시에는 야외학습이나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현대 농업의 직업 분야를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미래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의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계획 설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의무설치 조항을 “도농교육교류협력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510, 2020.8.21.).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농업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른 일반교과에 편입되어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공업 또는 상업계열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동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도농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4조의 도농교육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교육청에서 도농교육교류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의 “도농교육교류센터”는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 교육 콘텐츠·프로그램·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는 농업교육의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행정기관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또는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sup>2)</sup>

○ 따라서 안 제14조의 “도농교육교류센터”는 교육감이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안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도농교육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목표로 시민생활농업교육장, 학교 텃밭 원예프로그램, 도시농업 실천교육,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도시농업 실습교육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안 제14조의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센터 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행·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도농교류-도농교육교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도농교육교류센터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

도농교육교류센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sup>3)</sup>
----------	-------------------------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법제처, 의견13-0323,2013.1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 [붙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li> <li>■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li> <li>■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li> <li>■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li> <li>■ 농업교육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농장 운영</li> <li>■ 시민생활농업교육장 운영</li> <li>■ 시민자연학습장 운영</li> <li>■ 학교 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li> <li>■ 도시농업 실천교육(도시농부학교)</li> <li>■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운영</li> <li>■ 전통음식·농산물 이용 교육</li> <li>■ 미래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보급</li> <li>■ 도시농업 실습교육장 운영</li> <li>■ 농업인 교육·강소농 육성</li> </ul>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키우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농교육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내실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협력대상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교류협력대상”은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각 급 학교 및 농업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농어촌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6. “농업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농어업·농어촌에 관

한 교양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전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대상의 선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농어촌의 교류협력대상과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행·재정 수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6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된 도농교류의 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한 농업인의 날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농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조사·연구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교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농교육교류협력 운영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와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취소·중단) ①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과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등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실제적인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도농교육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도농교육교류협력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농업교육 또는 생태·환경교육, 도농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농교육교류센터는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
2.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3.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4.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농업교육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7. 그 밖에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선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선도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농업교육 및 도농 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